





4. 실현가능성 검증절차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실현가능성 검증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안의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개발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검증을 위하여 국토·지역·도시·지역개발 등에 관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검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안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실현가능성 검증업무를

4. 검증절차

가. -----  
-----  
-----  
-----에 검증을 시행할  
-----.

나. -----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검증업무 위탁 전문기관, 검증일정, 검증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으로부터 실현가능성 검증의 시행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검증일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검증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요청한 검증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검증기준(세부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법·절차 등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검증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은 검증업무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고 검증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증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현지실사, 관계 전문가 의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의견, 개발계획안 검증기준에 따른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검증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검증업무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결과-----  
-----  
-----  
-----  
-----  
-----  
-----  
-----  
-----  
-----  
-----

- ① 검증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유형별 검증기준  
 - 검증기준별 검증내용  
 - 사업계획별 조치 및 권고사항  
 - 최종검증결과
- ② 검증결과보고서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종합평가와 각 개발사업에 대한 '적합', '조정', '부적합' 등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검증결과보고서의 양식 및 규격, 구성 등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증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검증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5)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지

- (2) 전문기관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양식, 규격 및 구성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사업유형별 검증기준  
 ② 평가지표별 내용 및 점수  
 ③ 검증 종합점수 및 결과  
 ④ 사업계획별 조치 및 권고사항 등

<삭 제>

<삭 제>

마. (현행과 같음)

바. -----

지방자치단체장은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및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 II. 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

### 1. 평가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7, 시행령 제30조 및 제30조의12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의 개발계획 수립시 설정한 지역경제 향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집행되었는지 집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지원, 개발계획 변경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평가대상 개발계획

-----  
 -----  
 -----  
 -----  
 -----  
 -----  
 -----  
 -----  
 -----

## 5. 검증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현가능성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안을 조정할 수 있다.

## II. 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

### 1. 평가개요

----- 제14조, 제26조의4 및 제38조의3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등이 계획 수립 시 설정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  
 -----  
 -----

### 2. 평가대상

가. 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발 계획으로 한다.

<신 설>

### 3. 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 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①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지역특성, 독창성, 지역여론 등)
- ② 사업추진 실적(재원조달, 사업비 집행, 공정을 등)
- ③ 사업추진 성과(계획대비 입주 및 분양율, 이용객 등 수요, 사업효과 등)
- ④ 민자유치 노력도 및 유치 실적
- ⑤ 사업추진 노력(추진의지, 민원해소, 만회대책 등)

가. -----  
-----  
-----  
다만, 평가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승인 후 2년이 경과한 개발계획에 한하여 실시한다.

### 3. 평가방법

가. 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는 별표12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⑥ 사업추진체계와 추진방식의 효율성

<삭 제>

⑦ 규정준수 등(감사 지적, 법령 준수 등)

<삭 제>

⑧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삭 제>

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평가계획에서 정한 사항

<삭 제>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단위사업 또는 지역·지구별로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 적절한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지역·지구 개발계획별로 별표12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재원조달방식 (국비, 지방비, 민자 등) 또는 사업유형(기반시설, 지역특화, 관광휴양 등) 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삭 제>

### 4. 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절차

### 4. 평가절차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추진 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계획

가. ----- 개발 계획 집행결과의 평가를 때

의 집행결과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종합 개발지구 등의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려는 때에는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

년 실시하여야 한다.

나. ----- 집행결과의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집행결과의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

라. -----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평

하여 시행자에게 사업추진 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실적 등 평가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 자문을 받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 평가결과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구분한다.

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마. ----- 심사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 평가업무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및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5. 평가결과의 활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지원 및 편성시 지원규모, 지원시기 등을 조정하거나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집행결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사업지구는 사업제척, 사업규모 축소 등 개발계획 변경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5. 평가결과의 활용**

가. -----  
-----  
----- 개발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지구 등에 대해 사업제척·사업규모 축소 등 개발계획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나. 개발계획 변경을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계획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집행결과 평가**

**I.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1. 평가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 제26조의7 및 제38조의8에 따른 신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해

<신 설>

<신 설>

당 기반시설의 사업타당성을 평가(이하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라 한다)하여 국비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2. 평가대상**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다음 각 호의 신규 기반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가. 개발촉진지구 신규 기반시설사업

나. 특정지역 신규 기반시설사업

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신규 기반시설사업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규 기반시설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사업

**3. 평가방법**

가.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별표13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절한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별표13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사업시행자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위탁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타당성·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별표13의 평가기준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평가의

<신 설>

세부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평가절차**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대상이 되는 신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업무 위탁 전문기관,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의 시행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일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요청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

우, 전문기관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업무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현지실사, 관계 전문가 의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의견,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지표별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양식, 규격 및 구성 등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①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 ② 평가지표별 내용
- ③ 평가 종합결과
- ④ 사업별 조치 및 권고사항

<신 설>

등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및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5. 평가결과의 활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기반시설사업의 국비 예산지원 및 지원규모,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 기반시설의 규모가 적정수준보다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II.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의 평가**

<신 설>

**1. 평가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 제26조의7 및 제38조의8에 따른 기반시설사업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집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 변경 권고,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2. 평가대상**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사업으로 한다.

- 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 나. 특정지역 기반시설사업
- 다. 지역종합개발지구 기반시설사업
-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

<신 설>

부장관이 지원하는 기반시설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집행결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사업

**3. 평가방법**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사업의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별표1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절한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별표14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집행결과가 부진하다고 평가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부진상황 극복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을 위하여 전문가와 지역개발제도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2) 컨설팅 대상사업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컨설팅 지원단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평가절차**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의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집행결과의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별표14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업무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및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5. 평가결과의 활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 사업 집행결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컨설팅 지원단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규모가 적정수준보다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규모의 조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집행결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1. ~ 4. (생략)

제8장 행정사항

1. ~ 4. (현행과 같음)

(별표11) <개정 2014. 2. .>

개발계획안 실현가능성 검증기준

평가분야	사업시행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본 평가*	지자체, 민간 등	입지적합성	입지적합성
		정책목적에의 부합성	정책부합성
모사업 (개발사업)	지자체	계획 충실성	사업의 구체성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사업추진 가능성	토지 확보 용이성
	수요확보 가능성	관계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사업적정성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민간 등	계획 충실성	사업의 구체성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수요확보 가능성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사업적정성	토지 확보 용이성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지자체·민간 공동	계획 충실성	사업의 구체성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수요확보 가능성	토지 확보 용이성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사업적정성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지방비 확보 가능성		
	재원조달 현실성		
기반시설 사업	지자체, 민간 등	사업공공성	기반시설사업의 필요성
		연결성 및 중복성	타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인접한 유사 기반시설과의 중복성

\* 기본 평가는 배점 없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하나라도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사업을 제척

(별표12) <신 설>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기준**

평가분야	사업시행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 추진도	지자체, 민간 등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
		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 사업 비중	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 사업 비중

(별표13) <신 설>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평가분야	사업시행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사업 (1단계)	지자체	모사업의 진척 정도	토지 확보 용이성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	
		재정건전성	
	민간 등	모사업의 진척 정도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재원조달 가능성	토지 확보 용이성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
	지자체· 민간 공동	모사업의 진척 정도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재원조달 가능성	토지 확보 용이성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			
기반시설사업 (2단계)	지자체, 민간 등	사업적절성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시설규모의 적절성
			국고지원 비용 적절성

(별표14) <신 설>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기준**

평가분야	사업시행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재정조달 및 집행실적	지자체, 민간 등	예산집행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사업공정률	계획 대비 공정진행정도
		지방비 확보율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
		민간투자액 확보율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
사업관리 역량	지자체, 민간 등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및 운영 역량
			자체 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갈등대처 역량	민원 등 대응, 조치여부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 여부
			부진시 만회노력

##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	------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변경항목	변경사항		변경사유
			당초	변경	

\* 변경항목은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재(※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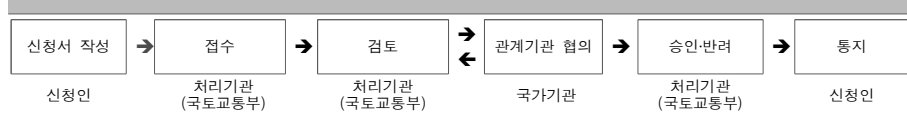
신청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해당사항에 한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li> <li>2. 위치도(축척 1/5,000~1/25,000 지형도)</li> <li>3. 사업별 투자계획(자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li> <li>4.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li> <li>5.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성검토서</li> <li>6. 개발사업의 개략도(축척 1/50,000 지형도)</li> <li>7. 개발사업의 구역경계를 표시한 도면(축척 1/50,000 지형도)</li> <li>8. 사업시행방법</li> <li>9. 토지이용현황과 토지이용계획</li> <li>10. 기타 중앙행정기관 협의에 필요한 서류</li> </ol>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